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3.03.31(금)]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2023.02.28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중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주택 소유자 중 기존주택 처분 서약자를 미서약자보다 우선하여 공급하는 방식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처분서약 여부와 관계 없이 [1주택 소유(주택처분서약)]로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존주택 처분서약 관련 청약홈 시스템 개편은 2023.05.01까지 완료 예정).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주택전시관 방문예약제 운영 안내
-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택전시관 관람을 방문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주택전시관 관람 사전예약은 선착순으로 대표 홈페이지(www.dlcon-apt.co.kr)를 통해 가능하며, 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 외에는 관람이 불가합니다.
- 또한, 당첨자 발표일 이후에는 당첨자만 사전서류제출 및 자격검증 방문예약을 통해 방문이 가능합니다.

1. 주택전시관 운영관련 안내
- 주택전시관 관람 및 사전서류제출 관련 상담은 상담전화(☎062-946-1680)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예약 시스템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시 당첨자 본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시 아래의 「V.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VI.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의 일정 안내에 따라 주택전시관 방문이 가능하오니, 방문 가능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방문시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동반자 1인 동행가능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2. 주택전시관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본인포함 최대 2인 입장 가능 / 대리인 위임시 포함)
- 주택전시관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주택전시관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기타 방역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주택전시관 관람, 당첨자의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 대상으로 개별 통보를 통한 방문 일정을 지정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일 내방객 제한 및 사전관람예약 신청 안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정책 등에 따라 방문예약제로 운영하며 예약을 통한 일일 내방객 제한하여 운영할 예정이오니 주택전시관 관람을 원하시는 고객 및 당첨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일 이후에는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주택전시관 입장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서류접수 및 주택전시관 내방 예약일정은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 주택전시관 내 분양 상담전화(☎062-946-1680)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자격 및 공급계약체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 등 해당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2.28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3.31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 남구)은「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31)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동일 자격 또는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주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2022.03.31)한 신청자가 광주광역시 1년 미만 및 전라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광주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라남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인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3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자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사전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 및 변경은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홈페이지(www.dlcon-apt.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물량 중 공급되지 않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당첨된 주택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행위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 제65조 및「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으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발코니확장 계약, 전매 포함)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 체결과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 구입 가능)
- 세액(기재금액 기준)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는「주택법」 제64조 및「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단,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1순위 자격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청약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조정대상 주택의 1순위자로 접수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및 1순위 자격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규제 안내
•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는 비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정부정책에 따라 대출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무소(견본주택)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사유로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 시 자기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해당 지역)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04월 10일(월)	04월 11일(화)	04월 12일(수)	04월 18일(화)	05월 02일(화) ~ 05월 04일(목)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소	■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 주택전시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682-12 ■ 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주택전시관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할 수 없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남구청 주택과 - 8984(2023.03.3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1143-36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9층 8개동 총 542세대 중 일반분양 아파트 176세대 [특별공급 81세대(일반[기관추천] 15세대, 다자녀가구 15세대, 신혼부부 33세대, 노부모부양 3세대, 생애최초 1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조합원 공급 361세대, 보류지 5세대 제외)
■ 입주예정시기 : 2024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세대수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생애최초	계	일반공급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민영주택	2023000104	01	63.9992A	63A	63.9992	19.1778	83.1770	44.3271	127.5041	39.1952	98	9	9	19	2	9	48	50	8
		02	63.9957B	63B	63.9957	19.4966	83.4923	44.3247	127.8170	39.3438	14	1	1	2	0	1	5	9	1
		03	84.9995A	84A	84.9995	25.2449	110.2444	58.8725	169.1169	51.9501	38	3	3	7	1	3	17	21	13
		04	84.9925B	84B	84.9925	25.0211	110.0136	58.8676	168.8812	51.8413	26	2	2	5	0	2	11	15	8
합계											176	15	15	33	3	15	81	95	30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3.3058)
※ 상기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전기/기계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금액 및 납부일정(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세대, 원)

약식표기	동별	층(구분)	해당세대수	분양가격 대지비	분양가격 건축비	분양가격 총분양가	계약금(10%) 계약시	계약금(10%) 계약후 30일 이내	중도금(60%) 1회 15% 2023.08.20	중도금(60%) 2회 15% 2023.11.20	중도금(60%) 3회 15% 2024.02.20	중도금(60%) 4회 15% 2024.05.20	잔금(30%) 입주시
63A	107동 1호 108동 1호,2호,3호,4호	2층	5	145,854,300	357,145,700	503,000,000	10,000,000	40,300,000	75,450,000	75,450,000	75,450,000	75,450,000	150,900,000
		3층	3	145,854,300	368,145,700	514,000,000	10,000,000	41,400,000	77,100,000	77,100,000	77,100,000	77,100,000	154,200,000
		4층	4	145,854,300	373,145,700	519,000,000	10,000,000	41,900,000	77,850,000	77,850,000	77,850,000	77,850,000	155,700,000
		5~10층	19	145,854,300	384,145,700	530,000,000	10,000,000	43,000,000	79,500,000	79,500,000	79,500,000	79,500,000	159,000,000
		기준층	20	145,854,300	395,145,700	541,000,000	10,000,000	44,100,000	81,150,000	81,150,000	81,150,000	81,150,000	162,300,000
	107동 3호,4호,5호	2층	3	145,854,300	352,145,700	498,000,000	10,000,000	39,80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149,400,000
		3층	3	145,854,300	363,145,700	509,000,000	10,000,000	40,900,000	76,350,000	76,350,000	76,350,000	76,350,000	152,700,000
		4층	3	145,854,300	368,145,700	514,000,000	10,000,000	41,400,000	77,100,000	77,100,000	77,100,000	77,100,000	154,200,000
		5~10층	18	145,854,300	379,145,700	525,000,000	10,000,000	42,500,000	78,750,000	78,750,000	78,750,000	78,750,000	157,500,000
		기준층	18	145,854,300	389,145,700	535,000,000	10,000,000	43,500,000	80,250,000	80,250,000	80,250,000	80,250,000	160,500,000
63B	107동 2호	2층	1	146,407,300	348,592,700	495,000,000	10,000,000	39,500,000	74,250,000	74,250,000	74,250,000	74,250,000	148,500,000
		3층	1	146,407,300	358,592,700	505,000,000	10,000,000	40,500,000	75,750,000	75,750,000	75,750,000	75,750,000	151,500,000
		4층	1	146,407,300	363,592,700	510,000,000	10,000,000	41,0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153,000,000
		5~10층	6	146,407,300	374,592,700	521,000,000	10,000,000	42,100,000	78,150,000	78,150,000	78,150,000	78,150,000	156,300,000
		기준층	5	146,407,300	385,592,700	532,000,000	10,000,000	43,200,000	79,800,000	79,800,000	79,800,000	79,800,000	159,600,000
84A	101동,103동,104동,106동 1호,2호 102동,105동 1호,2호,3호,4호	2층	11	193,318,200	479,681,800	673,000,000	10,000,000	57,300,000	100,950,000	100,950,000	100,950,000	100,950,000	201,900,000
		4층	1	193,318,200	501,681,800	695,000,000	10,000,000	59,500,000	104,250,000	104,250,000	104,250,000	104,250,000	208,500,000
		5~10층	4	193,318,200	515,681,800	709,000,000	10,000,000	60,900,000	106,350,000	106,350,000	106,350,000	106,350,000	212,700,000
		기준층	2	193,318,200	530,681,800	724,000,000	10,000,000	62,400,000	108,600,000	108,600,000	108,600,000	108,600,000	217,200,000
	104동,106동 5호	2층	2	193,318,200	472,681,800	666,000,000	10,000,000	56,600,000	99,900,000	99,900,000	99,900,000	99,900,000	199,800,000
		3층	1	193,318,200	487,681,800	681,000,000	10,000,000	58,100,000	102,150,000	102,150,000	102,150,000	102,150,000	204,300,000
		4층	3	193,318,200	494,681,800	688,000,000	10,000,000	58,800,000	103,200,000	103,200,000	103,200,000	103,200,000	206,400,000
		5~10층	6	193,318,200	508,681,800	702,000,000	10,000,000	60,200,000	105,300,000	105,300,000	105,300,000	105,300,000	210,600,000
		기준층	10	193,318,200	522,681,800	716,000,000	10,000,000	61,600,000	107,400,000	107,400,000	107,400,000	107,400,000	214,800,000
84B	101동,103동,104동,106동 3호,4호	2층	8	192,913,300	455,086,700	648,000,000	10,000,000	54,800,000	97,200,000	97,200,000	97,200,000	97,200,000	194,400,000
		3층	1	192,913,300	469,086,700	662,000,000	10,000,000	56,200,000	99,300,000	99,300,000	99,300,000	99,300,000	198,600,000
		4층	2	192,913,300	476,086,700	669,000,000	10,000,000	56,900,000	100,350,000	100,350,000	100,350,000	100,350,000	200,700,000
		5~10층	7	192,913,300	490,086,700	683,000,000	10,000,000	58,300,000	102,450,000	102,450,000	102,450,000	102,450,000	204,900,000
		기준층	5	192,913,300	504,086,700	697,000,000	10,000,000	59,700,000	104,550,000	104,550,000	104,550,000	104,550,000	209,100,000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주택형별 주거전용 및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 등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 및 중도금 대출을 받은 수분양자는 중도금 대출 전액을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에는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 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된 납부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선납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대금채권의 양도 등과 관련해 장미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사업시행자/분양공급자)와 정비사업대금채권 관련 표준사업 약정서 체결과 동시에 양해발생한 장미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분양대금채권(조합원 및 일반분양 수입금을 포함)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합니다. 장미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사업시행자/분양공급자)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납금액 중 약정별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는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도금 및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금액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 본 주택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주택전시관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63A	63B	84A	84B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광주광역시)	2	1	1	1	5
	국가유공자	2	0	1	0	3
	장기복무 제대군인	2	0	0	0	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0	0	0	1
	중소기업 근로자	2	0	1	1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9	1	3	2	15
신혼부부 특별공급		19	2	7	5	33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2	0	1	0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9	1	3	2	15
합 계		48	5	17	11	8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추첨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추첨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제4조제1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은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5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자격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구분	청약통장 구비여부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청약통장 필요 없음	국가보훈처 광주지방보훈청 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장애인	청약통장 필요 없음	광주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중소기업 근로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5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거주지역 ▶ 배점기준표 ▶ 자녀 수 ▶ 청약자 연령 ▶ 추첨]
- 해당지역(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단,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비고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지역(광주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33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01.01 ~ 03.31	전전년도 소득	전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증빙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전에 임신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기준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509,453원~ 7,811,342원	7,622,057원~ 9,146,467원	8,040,493원~ 9,648,590원	8,701,640원~ 10,441,967원	9,362,787원~ 11,235,343원	10,023,934원~ 12,028,720원
소득기준구분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509,453원~ 9,113,233원	7,622,057원~ 10,670,878원	8,040,493원~ 11,256,689원	8,701,640원~ 12,182,295원	9,362,787원~ 13,107,900원	10,023,934원~ 14,033,50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811,343원~ 10,415,123원	9,146,468원~ 12,195,290원	9,648,591원~ 12,864,787원	10,441,968원~ 13,922,622원	11,235,344원~ 14,980,458원	12,028,721원~ 16,038,293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113,234원~	10,670,879원~	11,256,690원~	12,182,296원~	13,107,901원~	14,033,507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의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상의 과세대상급여액(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3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며,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5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한하여 청약가능
* 당 사업지는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 가구 중 단독세대는 당 사업지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01.01 ~ 03.31	전전년도 소득	전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기준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2,171,622원	~13,031,113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462,289원~ 10,415,123원	9,908,674원~ 12,195,290원	10,452,641원~ 12,864,787원	11,312,132원~ 13,922,622원	12,171,623원~ 14,980,458원	13,031,114원~ 16,038,293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1인 가구	160%이하	~10,415,123원	~12,195,290원	~12,864,787원	~13,922,622원	~14,980,458원	~16,038,293원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상의 과세대상급여액(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 공급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 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 등 포함)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85㎡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자녀(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자녀 및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전용면적 85㎡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을 매입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 5. 20㎡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주택소유에 대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를 말한다))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일반공급 신청자보다 적어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 이하의 1순위 청약자는 가점제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1년이상 거주신청자가 광주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라남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이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 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①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1년
②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
③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IV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3.04.10(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 견본주택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682-12
일반공급	1순위	2023.04.11(화)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3.04.12(수)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주택전시관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단, 해당 특별공급 자격검증 서류 (특별공급 자격검증 서류 안내 참고)의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방문접수를 원하시는 분은 사전에 분양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해당 공고단지의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 세대원 등록방법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및「세대구성원 동의」
> · 청약연습방법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하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번호」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해 주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V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안내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제출기한 (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 2023.04.21(금) ~ 2023.04.25(화) (10:00~17:00) (5일간)
제출처	•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 견본주택(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682-12)
유의사항	※ 특별공급 예비 당첨자 및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의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은 추후 당사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해드릴 예정입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 서류 일체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은 견본주택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제출 기간 및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여부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소명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택에서 6개월간 보관 후 일괄 파기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특별공급신청서는 견본주택 청약시 필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인터넷 청약, 청약홈(apply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본인	당사 견본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원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비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23.03.31)로 설정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제외
		○	해외체류 관련 입증서류	본인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번역공증 첨부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단독세대일 경우(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 또는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기 위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직계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본인	해당기관 추천서 (기관 추천 명단 확인으로 대체)
다자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본인	견본주택 비치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공급신청자의 친자녀가 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미등재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혼인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당사 견본주택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중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재된 세대원 포함)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표1] 참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사실 증명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소득기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혼인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당사 견본주택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소득세 입증서류 (납부내역증명 등)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기록대조일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 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소득증빙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단,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사실 증명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이상 직계비속을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소득산정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1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소득기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해외체류 중인 경우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내 직계존속의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불인정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해외체류 중인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183일을 초과한 경우 불인정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인감증명서	청약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청약자 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청약자	인감증명서와 대조 必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인장	대리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31(금))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산정방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함)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 전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②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 국민연금공단 * 세무서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②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③ ①번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2021.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② 사실증명서(소득사실 없음을 입증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견본주택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31)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서류구분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및 세무서 *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1년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 해당직장 및 세무서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예) 2015, 2016, 2018, 2020, 2021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 서류	○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본인	견본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원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비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제외
		○	해외체류 관련 입증서류	본인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번역공증 첨부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단독세대일 경우(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 또는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기 위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직계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소득증빙서류 포함),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특별공급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제출					
일반공급 (가점제, 예비입주자)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본인	해당기관 추천서 (기관 추천 명단 확인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비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재혼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선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등본상에 등재에 한함)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자녀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청약자 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와 대조 必
	○		위임장	본인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인장	대리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31(금))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분양사무소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또한,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 상기서류 이외의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VI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문의 전화
당첨자 계약 체결	2023.05.02(화)~2023.05.04(목) (10:00~17:00), 3일간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 견본주택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682-12)	062-946-1680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합니다.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경우(특별공급 및 1,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아래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당첨자 자격 검증 시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인지세납부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or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 구매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구매절차 :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or 비회원 구매 → 구매 → 납부정보 입력(인지세납부 /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 / 금액 선택 / 1건) → 테스트 출력 → 결제(계좌이체or신용카드) → 출력 ※ 주의사항 : 인지세 납부 이후 출력된 전자수입인지 원본의 변경(소인 등)시, 인지세를 재납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 납부 증명서를 발코니 확장 계약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해당자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주민등록증, 인장	대리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현장수납은 불가)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성년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재공고 후 인터넷 청약방법으로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아래 계약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이 발생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첨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됩니다.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④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 (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인한 청약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에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견본주택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추가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3.03.31(금)]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별표 1] 부동산 거래신고사항(제3조제1항 관련)에 따라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분양계약)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납부기한 내 공급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인지세 납부 방법	
대상	부동산 분양계약서(발코니확장 계약 포함) 및 전매계약서 체결 대상
납부기한	[분양계약] 계약체결일 /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방법	계약서 작성 시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 또는 우체국, 은행 방문하여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
인터넷	기획재정부 정부수입인지 홈페이지(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 비회원로그인 또는 회원 로그인 → 구입 및 결제 → 전자수입인지 출력

※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동산 분양계약서(발코니확장 계약 포함)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며, 미납부 또는 정부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의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전부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를 납입하신 후 정부수입인지를 등기 시 반드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2021.01.01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9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무(과소)납부 세액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무(과소)납부 세액의 200%, 6개월 초과 무(과소)납부 세액의 300%의 가산세가 발생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조건이며,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공급계약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정책(규제지역지정, 중도금대출 조건 및 대출한도 제한,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및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공급대금을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또한 다주택자, 법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람)
- 금융관련정책,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등, 정부 및 금융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금(이하"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셔야 하며,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계약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 (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중도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대출취급기관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아도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중도금 대출기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하고, 대출이자는 후불제로 사업주체가 일정 비율에 한해 선납하며,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 이전에 대신 납부했던 대출이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게 지정한 기일 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 다음날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대출취급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바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아도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에 따라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 상 계약해제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소 및 입주 안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우리은행	1005-204-403435	장미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상기 입금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입금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향후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계약시 별도 안내함)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람(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비고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시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택전시관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VII 당첨자 발표 일정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2023.04.18(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dlcon-apt.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3.04.18(화) ~ 2023.04.27(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3.04.18(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 「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제1항[별표3] 규정에 의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소유권이전등기일,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3년으로 한다)까지 제한됩니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 포함) 단, 상속은 제외됩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 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 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서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당사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VIII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비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20%) 2023.08.20	잔금(70%) 입주지정일	비고
63A	14,900,000	1,490,000	2,980,000	10,430,000	
63B	15,000,000	1,500,000	3,000,000	10,500,000	
84A	19,800,000	1,980,000	3,960,000	13,860,000	
84B	19,900,000	1,990,000	3,980,000	13,930,000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 공사비	우리은행	1005-704-324917	디엘건설 주식회사

※ 상기 입금계좌는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입금계좌는 향후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계약시 별도 안내함)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람(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시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택전시관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3호 계약자 → '1030703홍길동')

■ 발코니확장 공사 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아파트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가구(일부)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기존 시공품목의 미설치로 인해 감소되는 금액과 발코니확장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분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다용도실 및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 제외)로 산정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공사는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하며,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급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시설된 세대는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비확장 세대는 제공품목의 차이가 있으며 상이한 내부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세대분전반내 차단기 수량이 감소하며, 등기구의 수량, 램프 및 배선기구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으며, 사양(램프의 종류 및 개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시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 / 측벽 / 세대간벽의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의 돌출이 있을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천정 또는 벽체의 돌출 및 실사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는 하자가 아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더 느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박스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발코니 바닥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텐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가 비확장형일 경우 층간 단열재 설치로 인한 설치공간(천장 깊이) 확보 불가로 아래층 세대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세대조건에 따라 확장 발코니와 관련한 평면 설계로 "발코니 확장옵션 미적용 시" 통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동등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실시공시 난간 및 창호의 위치, 난간의 높이, 난간 및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공 범위 외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하자보수 책임을 지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적법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며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계약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후 소음,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생기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자 공동의 관리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미확장 계약자는 입주 후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가 동의 필요)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물의 피난 시설 등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고,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할 시 등 관련공사로 인한 하자보수는 입주자 개인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준공(입주) 이후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구조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함으로 원상복구와 엄중한 처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는 확장형 평면도와 같이 일괄 확장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 외에 대한 계약자의 개별 요청은 불가합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발코니확장 및 관련 공사범위 등은 주택전시관 세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시 관련 법령상 발코니가 확장시 피난공간 등을 확보해야 할 수 있고 발코니 확장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어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관련 사항들은 (경미한)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 변경 기준 :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음.

■ 추가 선택 품목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사업주체에서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방법,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현관 중문, 현관 오픈형 신발장, 욕실 비데일체형 양변기, 욕실 복합환풍기를 제외한 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 설치공간 및 확장제공품목의 차이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1. 시스템에어컨(일반형) (단위 : 원, VAT 포함)

품목	주택형(㎡)	제조사	설치유형		판매가
시스템 에어컨	63A	LG 전자	ALT-1	거실 + 침실1	3,200,000
			ALT-2	거실 + 침실1+ 침실2+ 침실3	5,800,000
	63B		ALT-1	거실 + 침실1	3,200,000
			ALT-2	거실 + 침실1+ 침실2+ 침실3	5,800,000
	84A		ALT-1	거실 + 침실1	3,600,000
			ALT-2	알파공간 기본세대 : 거실 + 침실1+ 침실2 + 침실3 + 알파공간	7,500,000
			ALT-3	수납강화형 선택세대 :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6,300,000
	84B		ALT-1	거실 + 침실1	3,600,000
			ALT-2	거실 + 침실1+ 침실2+ 침실3	6,300,000

▶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격은 거실 냉매배관, 침실1 냉매배관 및 콘센트 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며, 옵션 선택시 거실(스탠드형) 냉매배관, 침실1(벽걸이형)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일반 에어컨 냉매배관 및 콘센트는 침실1(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만 기본으로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시스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벽걸이형, 스탠드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부위의 우물천장 크기가 변경될 수 있고, 실외기공간 및 발코니에 응축수 드레인 및 냉매배관 또는 배관용 슬리브가 노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택전시관의 경우 자체 난방을 위해 냉난방 겸용 제품 설치)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으로 실외기공간에 설치되며, 운전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콘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선택시 실내기의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상부세대가 비확장형일 경우 층간 단열재 설치로 인한 에어컨 설치공간(천장 깊이) 확보 불가로 아래층 세대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으며, 계약 전 주택전시관에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일부세대는 옵션 미선택 세대에 설치되는 냉매박스(거실, 침실1, 실외기실)와 콘센트가 설치 되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에 확인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2. 붙박이 가구류 (단위 : 원, VAT 포함)

품목	주택형(㎡)	설치위치	설치유형	판매가	비 고
오픈형 신발장	63A	현관	오픈형 신발장 (오픈장 상부 LED조명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마감 + 신발살균기 + 퀵라인선반 + 신발청소기)	1,100,000	기본제공 신발장과의 차인액 반영
	63B			1,100,000	기본제공 신발장과의 차인액 반영
	84A			1,100,000	기본제공 신발장과의 차인액 반영
	84B			1,100,000	기본제공 신발장과의 차인액 반영
손빨래 하부장	84A	다용도실	인조대리석(MMA) 상판 마감 + 하부장 + 손빨래싱크볼	800,000	
	84B			800,000	
침실1 붙박이장	63A	침실1	화장대(W1,000/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 + LG스타일러 5벌(S5BOC)	4,600,000	
	63B		화장대(W1,000/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 + LG스타일러 5벌(S5BOC) + 벽패널 마감	5,400,000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확장기본제공 화장대 및 워크인 드레스룸 (가구도어(경량벽 설치) + 시스템 선반)과의 차인액 반영
	84A		와이드 화장대(W1,400/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 + LG스타일러 5벌(S5BOC) + 오픈형 선반장 + 벽패널 마감	8,100,000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확장기본제공 화장대 및 워크인 드레스룸 (가구도어(경량벽 설치) + 시스템 선반)과의 차인액 반영
	84B		와이드 화장대(W1,400/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 + LG스타일러 5벌(S5BOC) + 벽패널 마감	6,000,000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확장기본제공 화장대 및 워크인 드레스룸 (가구도어(경량벽 설치) + 시스템 선반)과의 차인액 반영
침실2 붙박이장	63A	침실2	붙박이장	1,100,000	경량벽 포함
	63B			1,100,000	경량벽 포함
	84A			1,100,000	경량벽 포함
	84B			1,100,000	경량벽 포함

▶ 붙박이 가구(주방포함) 옵션선택시 설치 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가구 천장 및 바닥, 후면 및 측면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격 산정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 붙박이 가구 옵션 미선택시 해당부위는 도배지로 마감됩니다.
▶ 붙박이장 규격은 평면 타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붙박이 가구 옵션 선택시 가구의 수납형태 및 내부구성은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오픈형 신발장 옵션 선택시 기본형 신발장에 설치되는 우산걸이 및 다용도훅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현관 오픈형 신발장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신발살균기, 신발청소기, 퀵라인 선반은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오픈형 신발장 옵션 선택시 미선택시 기본형 신발장 판매가격 산정시 기본형 신발장과의 차인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현관 오픈형 신발장 옵션 선택시 판매가격은 상부 LED 조명, 신발살균기, 신발청소기의 전원공급 관련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63A, 63B 타입은 다용도실 설치공간 부족으로 손빨래 하부장 옵션 선택이 불가합니다.
▶ 63B, 84A, 84B타입은 침실1 붙박이장 옵션 미선택시 확장 기본 제공품목인 화장대 및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 + 시스템선반/워크인 드레스룸내 도배마감)이 설치되며, 침실1 드레스룸 가구 옵션 판매가격 산정시 해당품목 삭제에 대한 차인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침실1 붙박이장 또는 워크인 드레스룸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벽패널 마감은 본 공사시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옵션 미선택시 도배지로 마감됩니다.
▶ 침실1 붙박이장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의류관리기는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급배수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침실1 워크인 드레스룸 또는 붙박이장 옵션 선택시 해당타입 가구 설치부위(침실1/드레스룸) 창호의 커텐박스 크기(폭)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1 붙박이장/워크인드레스룸 옵션 선택시 판매가격은 기존 설치물품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한 금액입니다.(스위치, 콘센트, 배선기구, 다운라이트, 화재감지기 등)
▶ 침실2 붙박이장 옵션 선택시 가구설치를 위한 경량벽체가 가구 측면에 설치되며, 가구 설치로 인한 공간협소로 인해 침실문 옆에 설치된 스위치 및 온도조절기, 콘센트가 가구 측면 경량벽체로 이동 설치됩니다.
▶ 붙박이 가구류의 디자인, 내부 구성, 가구 하드웨어, 상세 등은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현관 중문 (단위 : 원, VAT 포함)

품목	주택형(㎡)	설치위치	설치유형	판매가	비 고
현관중문	전주택형	현관	3연동 수동 슬라이딩 도어 (금속프레임 / 그레이 불투명 유리)	1,900,000	양방향 댐핑, 화재감지기 포함 / 신발장 연계 건식벽 삭제비용 차감
			3연동 자동 슬라이딩 도어 (금속프레임 / 그레이 불투명 유리)	3,200,000	양방향 댐핑, 화재감지기 포함 / 신발장 연계 건식벽 삭제비용 차감

▶ 현관중문은 시공상 중문틀 또는 벽패널과 다소 이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먼지, 외풍 유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옵션 미선택시 벽패널 또는 도배지, 천장지로 마감됩니다.
▶ 현관중문 개폐방향은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옵션 선택시 천장몰딩, 가구, 디딤판, 벽패널의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신발장 측면이 건식벽으로 마감됩니다.
▶ 현관중문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중문 설치부위 신발장 케이싱 너비가 변경됩니다.
▶ 현관중문 옵션 선택시 화재감지기가 추가로 설치되며, 판매가격은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현관중문은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주택전시관과 다른 사양(제조사, 프레임 및 유리, 작동방식 등)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자동 슬라이딩 도어 옵션 선택시 도어 스위치는 본 공사시 위치가 변동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마감재 (단위 : 원, VAT 포함)

품목	주택형(㎡)	설치위치	설치유형	판매가	비고	
확장 기본형 주방가구에 선택 가능 (63A) // 아일랜드장 옵션 선택시 선택 가능 (63B/ 84A / 84B)						
주방가구 상판 및 벽체마감 (엔지니어드스톤)	63A	주방	주방 벽 + 주방가구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현대L&C 칸스톤 : 소피아RU608)	2,800,000	기본제공 주방벽 타일 및 주방가구 인조대리석(MMA) 상판 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택1
			주방 벽 + 주방가구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현대L&C 칸스톤 : 밀라디RU612)	2,800,000		
	63B		주방 벽 + 주방가구 상판 + 아일랜드장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현대L&C 칸스톤 : 소피아RU608)	2,400,000	기본제공 주방벽 타일 및 주방가구/ 아일랜드장 인조대리석(MMA) 상판 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택1
			주방 벽 + 주방가구 상판 + 아일랜드장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현대L&C 칸스톤 : 밀라디RU612)	2,400,000		
	84A (알파공간 기본세대)		주방 벽 + 주방가구 상판 + 아일랜드장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현대L&C 칸스톤 : 소피아RU608)	2,600,000	기본제공 주방벽 타일 및 주방가구/ 아일랜드장 인조대리석(MMA) 상판 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택1
			주방 벽 + 주방가구 상판 + 아일랜드장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현대L&C 칸스톤 : 밀라디RU612)	2,600,000		
	84A (수납강화형 선택세대)		주방 벽 + 주방가구 상판 + 아일랜드장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현대L&C 칸스톤 : 소피아RU608)	1,900,000		
			주방 벽 + 주방가구 상판 + 아일랜드장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현대L&C 칸스톤 : 밀라디RU612)	1,900,000		
	84B		주방 벽 + 주방가구 상판 + 아일랜드장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현대L&C 칸스톤 : 소피아RU608)	3,500,000	기본제공 주방벽 타일 및 주방가구/ 아일랜드장 인조대리석(MMA) 상판 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택1
			주방 벽 + 주방가구 상판 + 아일랜드장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현대L&C 칸스톤 : 밀라디RU612)	3,500,000		
거실 아트월 세라믹패널	63A	거실	CALACATTA ORO (반무광)	4,400,000	기본제공 아트월 디자인월 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택1
			TESSINO SMOKE PULIDO (유광)	4,700,000		
	63B		CALACATTA ORO (반무광)	5,200,000	기본제공 아트월 디자인월 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택1
			TESSINO SMOKE PULIDO (유광)	5,600,000		
	84A (알파공간 기본세대)		CALACATTA ORO (반무광)	7,900,000	기본제공 아트월 디자인월 마감, 복도 디자인패널 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택1 (옵션 선택시 세대 공용 공간 마감 고급화 옵션 선택 불가)
			TESSINO SMOKE PULIDO (유광)	8,500,000		
	84A (수납강화형 선택세대)		CALACATTA ORO (반무광)	8,700,000		
			TESSINO SMOKE PULIDO (유광)	9,400,000		
	84B		CALACATTA ORO (반무광)	6,000,000	기본제공 아트월 디자인월 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택1 (옵션 선택시 세대 공용 공간 마감 고급화 옵션 선택 불가)
			TESSINO SMOKE PULIDO (유광)	6,400,000		
거실벽 디자인패널	63A	거실	거실창 주변 벽면 + 거실개면	700,000	기본제공 도배 마감(걸레받이 설치)과의 차인액 반영	
	63B			800,000	기본제공 도배 마감(걸레받이 설치)과의 차인액 반영	
	84A			800,000	기본제공 도배 마감(걸레받이 설치)과의 차인액 반영	택1 (옵션 선택시 세대 공용 공간 마감 고급화 옵션 선택 불가)
	84B			900,000	기본제공 도배 마감(걸레받이 설치)과의 차인액 반영	택1 (옵션 선택시 세대 공용 공간 마감 고급화 옵션 선택 불가)
세대 공용공간 마감고급화 (세라믹패널 +디자인패널)	84A (알파공간 기본세대)	세대 공용공간	세라믹 패널 두오모 CALACATTA ORO (거실아트월 + 주방아트월 + 거실 소파 뒷벽면+ 복도2면) + 디자인 패널 (거실창 주변 벽면)+픽처레일	13,100,000	기본제공 아트월 디자인월 마감, 복도 디자인패널 마감, 거실소파 뒷벽 및 거실창 주변 벽 도배 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택1 (옵션 선택시 세라믹 패널 및 디자인 패널 마감 옵션 선택 불가)
			세라믹 패널 대동 TESSINO SMOKE PULIDO (거실아트월 + 주방아트월 + 거실 소파 뒷벽면+ 복도2면) + 디자인 패널 (거실창 주변 벽면)+픽처레일	14,000,000		
	84A (수납강화형 선택세대)		세라믹 패널 두오모 CALACATTA ORO (거실아트월 + 주방아트월 + 거실 소파 뒷벽면+ 복도2면) + 디자인 패널 (거실창 주변 벽면)+픽처레일	12,900,000		
			세라믹 패널 대동 TESSINO SMOKE PULIDO (거실아트월 + 주방아트월 + 거실 소파 뒷벽면+ 복도2면) + 디자인 패널 (거실창 주변 벽면)+픽처레일	13,800,000		
	84B		세라믹 패널 두오모 CALACATTA ORO (거실아트월 + 거실 소파 뒷벽면 + 복도2면) + 디자인 패널 (거실창 주변 벽면)+픽처레일	15,200,000	기본제공 아트월 디자인월 마감, 복도 디자인패널 마감, 거실소파 뒷벽 및 거실창 주변 벽 도배 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택1 (옵션 선택시 세라믹 패널 및 디자인 패널 마감 옵션 선택 불가)
			세라믹 패널 대동 TESSINO SMOKE PULIDO (거실아트월 + 거실 소파 뒷벽면 + 복도2면) + 디자인 패널 (거실창 주변 벽면)+픽처레일	16,200,000		
와이드 강마루	63A	전실	지아마루 F300 와이드 프라임월넛 (7.5T × 125mm × 1,200mm)	3,400,000	기본제공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와의 차인액 반영	택1
			지아마루 F300 와이드 러스트오크 (7.5T × 125mm × 1,200mm)	3,400,000		
	63B		지아마루 F300 와이드 프라임월넛 (7.5T × 125mm × 1,200mm)	3,300,000	기본제공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와의 차인액 반영	택1
			지아마루 F300 와이드 러스트오크 (7.5T × 125mm × 1,200mm)	3,300,000		
	84A		지아마루 F300 와이드 프라임월넛 (7.5T × 125mm × 1,200mm)	4,500,000	기본제공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와의 차인액 반영	택1
			지아마루 F300 와이드 러스트오크 (7.5T × 125mm × 1,200mm)	4,500,000		
	84B		지아마루 F300 와이드 프라임월넛 (7.5T × 125mm × 1,200mm)	4,100,000	기본제공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와의 차인액 반영	택1
			지아마루 F300 와이드 러스트오크 (7.5T × 125mm × 1,200mm)	4,100,000		

▶ 거실 및 해당타입 주방 아트월 및 복도면에 세라믹 패널 마감을 2가지 제품 중 옵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라믹 패널 마감 선택시 해당 부위 기본제공 디자인월 마감 및 디자인패널은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 판매가격에서 차감하였습니다.
▶ 거실 창호주변 및 거실 뒤쪽 벽면에 디자인 패널 마감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옵션 미선택시 도배지(걸레받이 설치)로 시공됩니다.
▶ 거실 부위 세라믹 패널 및 벽 디자인 패널 마감 옵션 선택시 마감두께 변경으로 인해 옵션 미선택세대(디자인월 및 도배지 마감)에 비해 거실 내폭 실사용 치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실 안목 치수가 도면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거실 및 해당타입 주방 아트월 세라믹 패널 마감은 나누기 및 패턴 연결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거실 창호주변 및 뒷벽면 옵션인 디자인 패널 마감은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아트월 세라믹패널' 및 '거실벽 디자인패널' 옵션 선택시 마감재 설치 범위가 중복되어 '세대 공용공간 마감 고급화' 옵션 선택이 불가합니다.
▶ '세대 공용공간 마감 고급화' 옵션 선택시 마감재 설치 범위가 중복되어 '거실아트월 세라믹패널' 및 '거실벽 디자인패널' 옵션 선택이 불가합니다.
▶ 전 주택형 주방벽 및 주방가구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옵션은 기본 설치되는 주방벽 타일 마감 및 주방가구 상판 인조대리석(MMA) 마감과의 차인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였습니다.
▶ 전 주택형 주방벽 및 주방가구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옵션 선택시 자재의 특성상 본 공사시 나누기 및 패턴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고 이음 부위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공사시 색상 및 무늬가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마감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상판은 주방벽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과는 본 공사시 자재 발주시기 차이로 인해 색상 및 무늬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84A, 84B 타입의 경우 옵션 선택시 다용도실에 설치되는 손빨래 하부장은 마감재 옵션선택이 불가능하며, 인조대리석 상판(MMA)으로만 마감됩니다.
▶ 와이드 강마루 마감 옵션은 전세 일괄 선택만 가능하며, 옵션 미선택시 기본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폭115mm)로 시공됩니다. 아울러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와이드 강마루는 색상 및 무늬가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시 마감자재(세라믹패널, 디자인 패널, 엔지니어드스톤 등)에 의한 나누기, 상세도 변경 등으로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통신수구 등)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세대 주방에는 가스 공급을 위한 설비가 되어 있으며, 주방 상판에는 가스렌지 옵션과 상관없이 가스연결구가 타공됩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5. 빌트인 가전제품 (단위 : 원, VAT 포함)

품목	주택형(㎡)	제조사	설치유형	판매가	비고	
비스포크 냉장고	63A	삼성전자	1도어 키친핏 냉장 (RR40A7(9/8)95AP) + 1도어키친핏변온 (RZ24A5(9/8)G0AP) + 1도어키친핏김치 (RQ34A7(9/8)45AP) + 키큰서랍장 (W400)	6,100,000	비스포크 냉장고 옵션 선택시 확장기본 냉장고장에서 삭제되는 부분과의 차인액 반영	주택형별 택1
	63B		1도어 키친핏 냉장 (RR40A7(9/8)95AP) + 1도어키친핏변온 (RZ24A5(9/8)G0AP) + 1도어키친핏김치 (RQ34A7(9/8)45AP) + 키큰서랍장 (W400)	6,100,000	비스포크 냉장고 옵션 선택시 확장기본 냉장고장에서 삭제되는 부분과의 차인액 반영	
	84A (알파공간 기본세대)		1도어 키친핏 냉장 (RR40A7(9/8)95AP) + 1도어키친핏변온 (RZ24A5(9/8)G0AP) + 1도어키친핏김치 (RQ34A7(9/8)45AP) + 팬트리장 (W900)	7,000,000	비스포크 냉장고 옵션 선택시 확장기본 냉장고장에서 삭제되는 부분과의 차인액 반영	
	84A (수납강화형 선택세대)		1도어 키친핏 냉장 (RR40A7(9/8)95AP) + 1도어키친핏변온 (RZ24A5(9/8)G0AP) + 1도어키친핏김치 (RQ34A7(9/8)45AP) + 팬트리장 (W1000)	7,100,000		
	84B		1도어 키친핏 냉장 (RR40A7(9/8)95AP) + 1도어키친핏변온 (RZ24A5(9/8)G0AP) + 1도어키친핏김치 (RQ34A7(9/8)45AP) + 팬트리장 (W1200)	7,200,000	비스포크 냉장고 옵션 선택시 확장기본 냉장고장에서 삭제되는 부분과의 차인액 반영	
오브제 냉장고	63A	LG전자	오브제 4도어 냉장고 (BC451AA1) + 오브제3도어김치냉장고(BC3K1AA1) + 키큰서랍장(W400)	6,200,000	오브제 냉장고 옵션 선택시 확장기본 냉장고장에서 삭제되는 부분과의 차인액 반영	
	63B		오브제 4도어 냉장고 (BC451AA1) + 오브제3도어김치냉장고(BC3K1AA1) + 키큰서랍장(W400)	6,200,000	오브제 냉장고 옵션 선택시 확장기본 냉장고장에서 삭제되는 부분과의 차인액 반영	
	84A (알파공간 기본세대)		오브제 4도어 냉장고 (BC451AA1) + 오브제3도어김치냉장고(BC3K1AA1) + 팬트리장(W900)	7,100,000	오브제 냉장고 옵션 선택시 확장기본 냉장고장에서 삭제되는 부분과의 차인액 반영	
	84A (수납강화형 선택세대)		오브제 4도어 냉장고 (BC451AA1) + 오브제3도어김치냉장고(BC3K1AA1) + 팬트리장(W1000)	7,200,000		
	84B		오브제 4도어 냉장고 (BC451AA1) + 오브제3도어김치냉장고(BC3K1AA1) + 팬트리장(W1200)	7,300,000	오브제 냉장고 옵션 선택시 확장기본 냉장고장에서 삭제되는 부분과의 차인액 반영	
하이브리드쿡탑/ 인덕션	전주택형	LG전자	인덕션 2구 + 하이라이트 1구 (BEY3GTBI)	1,000,000	- 기본제공 SK매직 3구 가스쿡탑과의 차인액 반영 - 전기판넨 추가 및 가스차단장치 추가설치비용 반영 (GRA-BI322H 제품은 가스차단장치 제외)	택1
		SK매직	인덕션 2구 + 가스 1구 (GRA-BI322H)	850,000		
		LG전자	인덕션 3구 (BEI3GTBI)	1,200,000		
		SK매직	보더리스 인덕션 (IHR-BQ40E)	1,950,000		
식기세척기	84A/84B	LG전자	식기세척기 12인용 (DUB22SB2)	1,160,000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확장기본제공 수납공간(여닫이도어)과의 차인액 및 전기 공사 추가비용 반영	택1
		SK매직	식기세척기 14인용 (DWA-90R5B)	1,350,000		
전기오븐	63A	LG전자	광파오븐 (MZ385EBTA)	450,000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확장기본제공 주방가구 전자레인지장과의 차인액 반영	택1
		삼성전자	전기오븐 (NQ36A6555CK)	400,000		
		SK매직	스팀오븐 (EON-B401SA)	650,000		
아일랜드장 옵션 선택시 선택 가능 (63B / 84A / 84B)						
주방 아일랜드장	63B		인조대리석(MMA) 상판 마감 + 전자레인지장 + 밥솥장 + 스마트폰 무선충전겸용 매립형 콘센트	1,300,000		주택형별 택1
	84A		인조대리석(MMA) 상판 마감 + 전자레인지장 + 밥솥장 + 수납장 + 스마트폰 무선충전겸용 매립형 콘센트	1,400,000		
	84B		인조대리석(MMA) 상판 마감 + 전자레인지장 + 밥솥장 + 수납장 + 스마트폰 무선충전겸용 매립형 콘센트	1,600,000		
아일랜드장 + 전기오븐	63B	LG전자	광파오븐 (MZ385EBTA) + 아일랜드장	1,750,000	아일랜드장내 전기오븐 옵션 추가선택시 삭제되는 전자레인지장과의 차인액 반영	
		삼성전자	전기오븐 (NQ36A6555CK) + 아일랜드장	1,700,000		
		SK매직	스팀오븐 (EON-B401SA) + 아일랜드장	1,950,000		
	84A	LG전자	광파오븐 (MZ385EBTA) + 아일랜드장	1,850,000	아일랜드장내 전기오븐 옵션 추가선택시 삭제되는 전자레인지장과의 차인액 반영	
		삼성전자	전기오븐 (NQ36A6555CK) + 아일랜드장	1,800,000		
		SK매직	스팀오븐 (EON-B401SA) + 아일랜드장	2,050,000		
	84B	LG전자	광파오븐 (MZ385EBTA) + 아일랜드장	2,050,000	아일랜드장내 전기오븐 옵션 추가선택시 삭제되는 전자레인지장과의 차인액 반영	
		삼성전자	전기오븐 (NQ36A6555CK) + 아일랜드장	2,000,000		
		SK매직	스팀오븐 (EON-B401SA) + 아일랜드장	2,250,000		

▶ 주택형별 냉장고장 옵션 선택시 냉장고장 설치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가구 후면 및 측면, 천장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간은 고객님이 소유하신 제품크기에 따라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으며, 냉장고의 돌출정도는 제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63B, 84A, 84B 타입의 경우 아일랜드장 옵션 선택시 인조대리석(MMA) 상판으로 마감되며, 가구내 배선기구의 설치로 인해 아일랜드장은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 63B, 84A, 84B 타입의 경우 아일랜드장 옵션 선택시 아일랜드장 설치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가구 측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전기오븐 옵션 선택시 판매가격은 전용회로와 관련된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63B, 84A, 84B 타입의 경우 아일랜드장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스마트폰 무선충전겸용 매립형 콘센트는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63B, 84A, 84B 타입의 경우 아일랜드장 옵션 판매가격은 전자레인지, 밥솥장, 스마트폰 무선충전겸용 매립형 콘센트의 전원공급 관련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주택형별내 옵션 선택에 따라 전원 공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 스마트폰 무선충전겸용 매립형 콘센트, 전기오븐 선택시 가구장 내 배선이 노출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 가구의 수납형태 및 내부구성은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가구의 디자인, 내부 구성, 가구 하드웨어, 상세 등은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스포크 냉장고, 오브제 냉장고 설치시 삭제되는 부위는 비교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해당품목 판매가격에서 차감하였습니다.
▶ 각 주택형별 비스포크 냉장고, 오브제 냉장고 선택시 타입별로 키큰서랍장 또는 팬트리장이 동시에 설치(개별 옵션선택 불가)되며, 해당품목 판매가격에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 또는 김치냉장고 설치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 옵션 선택시 가스차단장치가 설치되며 판매가격에 포함되었습니다. 단, 하이브리드 쿡탑 SK매직 GRA-BI322H 제품만 가스타 쿡탑 설치로 인해 가스가 연결됩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기본 설치 3구 가스쿡탑과의 차인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 옵션 선택 유무에 상관없이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기존 위치에 설치됩니다.
▶ 빌트인 식기세척기 옵션 선택시 콘센트가 추가로 설치되며, 판매가격에 포함하였습니다.
▶ 빌트인 식기세척기는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수납공간(여닫이 도어설치)과의 차인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63B, 84A, 84B타입의 경우 빌트인 전기오븐은 아일랜드장 옵션 선택후 추가 선택 가능하며, 추가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아일랜드장내 전자레인지 수납장과의 차인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63A타입의 경우 빌트인 전기오븐은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아일랜드장내 전자레인지 수납장과의 차인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빌트인 식기세척기는 SK매직 제품의 경우 가구패널로 마감되며, LG전자 제품은 별도의 가구패널 마감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삼성 비스포크 및 LG 오브제 가전은 B2B 전용 모델이며 상기 표기된 바와 같이 주택형별로 맞춤 구성된 세트로만 판매하고, 상품의 조합 및 설치위치, 모델, 디자인, 색상은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개별선택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 비스포크 냉장고/오브제 냉장고는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해당세대 구성 제품별 설치위치 포함)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은 제품의 단종, 변경, 성능향상 등 제조사의 사정으로 인해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조 명 (단위 : 원, VAT 포함)

품목	주택형(㎡)	설치위치	설치유형	판매가	
거실 우물천장 조명	63A	거실	우물천장 시트패널 + 직간접 조명 + 디밍제어시스템	3,100,000	기본제공 거실 직부등 및 우물천장 도배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63B			3,000,000	기본제공 거실 직부등 및 우물천장 도배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84A			3,700,000	기본제공 거실 직부등 및 우물천장 도배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84B			3,700,000	기본제공 거실 직부등 및 우물천장 도배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침실 색온도디밍시스템	63A	전실	색온도디밍시스템 (침실1 + 침실2 + 침실3)	300,000	
	63B	전실	색온도디밍시스템 (침실1 + 침실2 + 침실3)	300,000	
	84A	전실	색온도디밍시스템 (침실1 + 침실2 + 침실3)	380,000	
	84B	전실	색온도디밍시스템 (침실1 + 침실2 + 침실3)	380,000	

▶ 거실 우물천장 조명 옵션 선택시 우물천장이 시트 패널로 마감되며, 우물 천장내 직부등이 삭제되고 직간접 조명으로 설치됩니다. 설치되는 우물천장 직간접 조명은 상부 간접조명, 하부 직부등 조명으로 구성되며, 하부 직부등 조명은 디밍제어가 가능합니다.(색온도 조절은 불가 합니다)
▶ 거실 우물천장 조명 옵션 선택세대는 우물천장 시트 패널 마감으로 인해, 옵션 미선택 세대(도배지 마감)와 우물천장 깊이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 조명 옵션 선택시 디밍을 위한 스위치가 추가로 설치될 경우를 고려하여, 예비 스위치가 제공됩니다. 아울러 옵션 미선택 세대는 예비 스위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 조명 옵션 선택시 전원공급용 배관만이 추가 설치되며(63A형 침실3 도어측면, 63B형 침실2 도어측면, 84A형 옵션 선택에 따라 현관팬트리 또는 알파공간, 84B형 현관팬트리) 설치위치에 따라 시스템선반 구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둥이나 벽체 형태에 따라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 조명 옵션 선택시 판매가격은 기존 직부등 및 스위치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우물천장 조명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시트패널은 본 공사시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직간접 조명은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 일체형 조명은 라인조명 특성상 조명간 이음새가 발생하며 이음새의 위치와 수량은 세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침실에 설치되는 색온도 디밍 시스템은 조명의 밝기와 색온도(전구색 ~ 주광색)를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추후 조명기구 및 스위치 교체 시 기능의 제한이 발생합니다.
▶ 침실 색온도디밍시스템 판매가격은 기존 침실의 직부등 및 스위치와 관련된 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7. 욕실 상품 (단위 : 원, VAT 포함)

품목	주택형(㎡)	설치위치	설치유형	판매가	비고
비데일체형 양변기	전주택형	욕실1 + 욕실2	비데일체형 양변기	700,000	기본제공 욕실1 투피스형 양변기, 욕실2 분리형비데 + 투피스형 양변기와의 차인액 반영
욕실 복합 환풍기	전주택형	욕실1 + 욕실2	욕실 천장 복합환풍기 설치	860,000	기본제공 욕실1, 욕실2 환기디퓨저 및 배기팬과의 차인액 반영

▶ 비데 일체형 양변기 및 복합환풍기 옵션은 욕실1 및 욕실2 동시 설치 옵션선택만 가능하며, 욕실별 개별 옵션선택이 불가합니다.
▶ 비데 일체형 양변기 및 복합 환풍기는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데 일체형 양변기 옵션 미선택시 욕실1은 투피스형 양변기, 욕실2는 투피스형 양변기/분리형 비데가 설치됩니다.
▶ 비데 일체형 양변기 컨트롤러는 옵션 선택시 리모컨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안쪽에 배기 디퓨저 및 욕실 천장내부에 배기휀이 설치되며, 디퓨저 위치는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합 환풍기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디퓨저와 배기휀은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 판매가격에서 차감되었습니다. (복합 환풍기 내 욕실팬 기능 있음)
▶ 복합 환풍기는 모드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복합 환풍기 설치시 옵션 미선택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천장 내부 설비, 등기구의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합 환풍기의 리모콘은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리모컨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합 환풍기 옵션 선택시 판매가격은 전용회로와 관련된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8. 전동빨래건조대 (단위 : 원, VAT 포함)

품목	주택형(㎡)	설치위치	설치유형	판매가
전동빨래건조대	전주택형	다용도실	전동빨래건조대	150,000

▶ 전동빨래건조대 옵션 선택시 리모컨으로만 작동되며, 별도의 스위치는 설치 되지 않습니다.
▶ 전동빨래건조대 옵션 선택시 협력업체 계약관계에 따라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가 다소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전동빨래건조대 옵션 선택으로 인해 타워형(세탁기, 건조기 일체형) 제품 및 세탁기, 건조기 직렬 설치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제품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아래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단, 추후(계약 시)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를 안내할 경우 반드시 해당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에서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 계약금 납부 : 계약시 아래 계좌 입금 후 입금증 주택전시관 제출(주택전시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통합옵션 선택품목의 계약자를 및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작성 후 전정한 별매품에 준함.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션)	우리은행	1005-304-349442	디엘건설 주식회사	

※ 상기 입금계좌는 향후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계약시 별도 안내함)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람(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입금 계좌는 유상 옵션 하단에 표기)
◎ 유의사항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 공간 및 기본 설치품목의 제약상 발코니 확장형 계약 세대만 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관한 상세내용 중 공고문에 기재하지 못한 내용은 추후 추가 선택품목 계약시 안내하여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아파트 공급가격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와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자재, 공사관리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현장여건에 따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및 발코니 미확장 세대는 추가선택품목 계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동가 이상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시 동급, 동가 이상의 타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예정된 계약자는 수긍하여야 하며 추가 요구는 하지 않음)
- 추가선택품목 중 시스템에어컨은 3년, 빌트인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전기 쿡탑, 의료관리기) 2년, 붙박이가구는 2년, 엔지니어드 스톤 등 은 2년간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입주자의 관리부실에 의한 발생하는 하자는 제외)
- 상기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전 주택전시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기준으로 계획되었으며, 설치 공간 및 기본 설치품목은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된 설치되는 품목으로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전 주택전시관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에는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개별 유의사항은 품목별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라며 옵션 선택이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미선택시에는 기본 설계(확장 기본형)대로 시공됩니다.
- 준공이후 현관중문을 개별적으로 설치시 현관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화재감지기 미설치로 인해 현관 내 화재 감지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주요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의 단열재 설치는 비난방공간과 면하는 난방공간의 외벽을 단열조치하여야 한다.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라야 한다.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라야 한다.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성능등급의 표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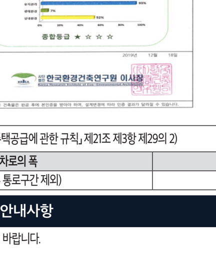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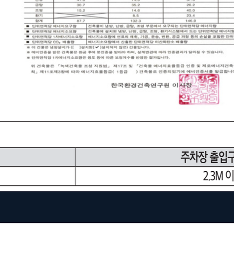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 2)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6M (주동하부 통로구간 제외)	2.3M 이상	2.3M 이상

IX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학교시설 관련 유의사항
• 해당 단지 입주세대의 통학학교(군)는 광주제석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2학교군이며, 사업주체(시행사)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임.
※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 참조
【초등학교】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eobu.gen.go.kr/) / 행정정보마당 / 공지사항
【중학교】
-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공통사항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주택전시관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시 분양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 신청접수는 특별공급 유형별, 일반공급 순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주택을 비교하여 주택전시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층별 등 공급금액의 상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세대는 단지 고저차로 인한 방음시설, 옹벽 등 으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거벽형 칸막이 제거 등) 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의 살수반경 기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에게 부담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누수, 주변 세대 피해 등)
· 전화상담 및 분양홍보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 향상이나 개선으로 반영을 원할 경우 잔금 완납후 계약자 스스로 적법하게 인테리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야간 경관조명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주택전시관으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 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문주,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 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자전거 보관대, DA(기계·전기실·발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쓰레기 분리보관소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연기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창호의 형태 및 위치는 주택전시관을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은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 측량에 따라 증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도로,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분양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하여야 함)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일부 타입에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시행령제119조1항3호나목」에 따라 산정 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 건설교통부)"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 하였습니다.
· 본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구조개선, 시공성 및 마감품질 향상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변경인·허가를 진행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저수조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부력방지 공법을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예정이며 배수펌프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인근지역에 개발계획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분양 후 변경될 수 있기에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각동 출입구 게시판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상가와 대지는 분할되지 않은 대지로서 아파트 대지 내 일정면적이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은 차후 확정측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가는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주변 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해야하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 개발, 일조권, 조망권, 혐오시설,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은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단지 내부여건
· 계약 전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시어(사업승인 설계도서 및 시방서 비치)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지 주출입구 외의 단지 내 보행자통로(단지 내 연결통로 포함)의 디자인(선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방문은 가능하나,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전실확장 등)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실 시공 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 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골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형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입니다.
· 호수별 조망권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야간 경관조명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셔야 합니다.
· 아파트 후면출입구 설치동의 저층세대는 조망과 접근동선거리가 불리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세대는 매연, 소음(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로 인해 일부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진동 피해,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실외 어린이 놀이터, 휴게소, 쓰레기분리보관소, 주민공동시설, 산책로 등)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냄새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기계실 전기실등 각종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 설비 및 환기용 구조물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상가)가 연결이 안 되어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6동, 107동, 108동 데크층에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 설치로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구조물과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녹지구간 내 조경 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붙박이 가구류(신발장, 붙박이장(옵션), 화장대(옵션),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옵션), 욕실장,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실 시공 시 세대내 주방가구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현관/발코니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 합니다.
· 지상 1~2층(필로티 포함)과 최상층 확장형 세대는 세대 내 방범을 위하여 창호에 방범창 등 동체 감지기가 설치되며, 기본형 세대는 발코니에 설치됩니다.
· 아파트 옥탑, 지붕, 측면에 의장용 구조물, 환기설비, 방송안테나, 피뢰침, 태양광판넬, 야간 경관조명, 이동통신 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설비는 본 공사시 수량, 위치,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태양광 집광판에 의해 세대 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창문에서 태양광 집광판 및 관련 설비가 보일 수 있으며, 경관 침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동통신중계장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옥외안테나 설치 예정 위치 : 옥상층(102동, 105동) / 지상1층(105동과 106동 사이, 102동과 105동 사이, 103동과 104동 사이, 107동과 108동 사이)
 - 중계장치 설치 예정 위치 : 옥상층(102동, 105동) / 지하2층 팬룸#5
· 공동주택 공용홀 및 계단실의 설치되는 창은 주동의 형태와 조합에 따라 유무가 발생하며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는 동과 층이 있고 채광·환기창의 설치 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로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제어반(최상층 엘리베이터홀)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제어반 작동 및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 등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으며, 이용하는 세대수에 따라 일부 승강기 운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하부 및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규모,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구조에 따라 필로티 하부 자전거보관소 수량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동지하,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벽체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각 실 크기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창호크기, 위치, 재질, 외부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보관소의 위치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분리보관소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보관소의 위치는 각동 주변에 배치되며, 일부 세대 내부에서 쓰레기분리보관소가 보일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외 부분적으로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포장재, 시설물 등의 세부 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저층부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계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D/A(설비 환기구)의 노출이 있어, 통행로 등의 사람이 유입되는 공간에 인접한 경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벨차에 의해 각 동별 출입구 레벨이 상이함을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위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자 등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이용범위가 상이하오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 주차장의 차로높이는 2.7M이고 택배차 진입이 가능하며 지하2층의 차로높이는 2.3M이고 택배차량 진입은 불가합니다. 지하주차장 주차면은 2.1M 이상 높이로 계획되어있음을 인지하고 계약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택배차량 출입을 위해 지하주차장 일부 구간이 2.7m 이상이나, 택배차량 진입은 불가하여 지상 택배보관함 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 또는 계단실 등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가스정압기실이 단지내부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에는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인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가 주출입구 레벨은 현장상황에 따라 계획 레벨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계단 및 램프 등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일부 차단하는 청정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2회 이상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상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며 고층세대의 경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여야 하며 지상도로와 거리가 떨어진 일부세대의 경우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일부 지상부 주차장 계획 및 주차램프 위치로 인해 저층 세대는 소음, 야간 빛공해로 인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분양 카탈로그나 모형을 통해 충분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 일부 근린생활시설용 지상 주차장(106동, 107동주변)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매연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분양 카탈로그나 모형을 통해 인지하셔야 합니다.
· 주동 외벽 마감 하부는(2층이하) 석재이며, 그 외 마감은 수성페인트 도료로 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위치 및 통행 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주출입구는 필로티 또는 후면 진입인 관계로 각 동별 출입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동출입구 및 피로티는 각 동호별로 천장 높이, 마감재, 형태, 출입방식, 개소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담장)는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일부 동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다른 동에서 이용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상부세대는 이동이나 단지 내 행위에 따른 소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도난이나 기물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주는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에 배치될 예정임을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라며 문주와 인접한 주동의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 및 조망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고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전·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일부 저층세대는 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 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며, 소방법에 따라 안전매트 구간의 추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단지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CCTV설치 위치는 단지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쓰레기보관소,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카 내부, 아파트 지하층·1층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홀, 1층 계단실, 옥상출입구에 설치되며 설치장소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안전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스마트홈 서비스를 위한 고정IP는 준공후 4개월간 무상제공되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간사업자로부터 고정IP를 유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 태양광 발전설비는 101동, 102동, 103동, 105동 옥상층에 설치되며 태양광발전에 의한 전기는 공용부 전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주방 일부 발코니(다용도실),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 등은 제외)기준으로 시공 됩니다.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 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직접외기에 면해 결로에 취약하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인하여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외부창호 설치기준은 주택전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일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 가구류(신발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욕실장,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 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입주자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콘크리트벽체의 이질재(경량벽체 또는 조적벽체, 블록 등)의 접합부 처리 부분의 디테일이 시공상의 이유로 주택전시관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설계관련 주요 고지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일반사항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변경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위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문주, 부대시설, 조경시설, 단지내 도로, 안내시설물, 동출입구, 필로티 등은 세대 전용면적이나 대지지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으로서 향후 관계기관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내 동별,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시에 제시된 CG(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사업계획변경승인)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해서 계약자는 이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계획은 실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등) 또는 가전제품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위세대 실별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면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특성상 위치, 크기, 동선 등의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주택전시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됩니다.
· 면적 계산상 소수점 4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 처리로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의 동 배치 특성에 따라 일부 동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하는 바닥단열 및 마감재, 시시,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 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합,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측 준공 시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여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조경(녹지)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 시공 시 모형 및 홍보물, 조감도 등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식재되는 나무의 종류 및 배치, 수량 등은 모형 및 분양홍보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놀이시설물을 포함한 단지 내 시설물의 디자인과 배치는 모형 및 분양홍보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인접 건물에 의해 조망, 일조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니 청약자 및 계약자는 필히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케팅을 위하여 제작 된 악도 및 지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위한 제작물 이므로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 및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내 단지 및 세대 도면이 비치되어 있사오니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반드시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의 소방관련 시설물 및 설비는 본공사 진행 시 소방시설 기준에 따라 허가도서의 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 주차장 내 주차관리실은 입주 후 신속한 하자상담 및 처리 등 CS업무의 편의와 효율성을 위하여 2년간 하자보수 관련사무실로 활용됩니다. 활용기간 동안(사용기간 변경 가능)은 당 시설의 이용이 제한 됩니다. 활용기간 종료 후 입주민의 부대시설(다목적실)으로 활용됩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의 변경 인허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위생기구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리를 고려하여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단지내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1동, 106동 지하에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이 103동, 108동 지하에는 오수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등의 유지관리 비용 및 사용비용은 각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상부 혹은 측면에는 냉난방용 실외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의 경우 이로 인한 미관 저해,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105동 하부에는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107,108동 하부에는 주민공동시설, 101동과 107동 인근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여 저층부 세대의 경우, 실외기실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반여건에 따른 아파트 동, 지하주차장의 지질 및 기초형식의 변경 또는 보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조안정성 확보를 위한 단면 크기 및 철근배근 조정 등의 구조계획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2개의 변경사항은 주택구조기술사의 구조확인 및 감리자의 확인을 득한 후 변경되는 사항이며, 향후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입주자등의 절차를 감리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2. 단지배치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 인·허가에 따라 단지내외 도로(인도, 비상차량 동선 등),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실외 어린이놀이터 등)등의 위치 및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입주자는 이의 없이 동의하며, 입주자에게 변경사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곽의 옹벽, 돌쌓기벽(조경석 쌓기 포함) 등의 위치 및 형태는 준공접속 인·허가 관계로 변경(도로형태, 레벨형태)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 시공 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 전주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경계 및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에 따른 동간거리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비상용 발전기등 시설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진동, 연기, 바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사용상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는 단지외 도로와 단차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 쓰레기는 단지 내 별도의 수거시설을 사용하며, 차량을 통한 수거 예정입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 106동 인근 지하층 발전기실에서 전기안전관리자 년1회 및 관리주체의 비정기적 발전기 시운전으로 D.A를 통한 매연발생 및 소음, 진동 등 생활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보안등 및 CCTV 위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사 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 106동 인근 지하층에는 전기실 · 발전기실등의 급기/배기를 위한 D.A(환기구)가 지상에 설치되어 인접세대에 소음, 냄새, 진동, 매연발생 등의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3. 아파트 주동
· 실외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분리보관소,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환경권 및 소음·진동·냄새 등 사생활권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지붕, 측면에 의장용 구조물, 환기설비, 방송안테나, 피뢰침, 태양광판넬, 야간 경관조명, 이동통신 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1,106동 지하에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이 103,108동 지하에는 오수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105동 하부에는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107,108동 하부에는 주민공동시설, 101동과 107동 인근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여 저층부 세대의 경우, 실외기실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운행속도는 MRL 105m/min, 옥외 엘리베이터의 운행속도는 MRL 60m/min의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며, 승강기 운행시 인접세대에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마의 우려가 있는 저층, 고층의 일부 세대용 수도 계량기의 동파 방지용 열선 전원은 공용전기 요금이 부과됩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외 부분적으로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외부색채, 입면(창호형태 등) 및 옥상구조물 등은 인허가 및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차이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으며,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타일 또는 석재 재료가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에 변경이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조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의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 시공 시 각 동 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105동 1층에 어린이집, 경로당이 설치되고, 107동, 108동 하부 지하층층에 주민공동시설이 위치 되어 있어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사양은 지하층, 1층, 2층 이상(기준층) 간의 기준이 상이합니다.
· 주거동의 공용홀(승강기홀/계단실) 창호는 주동의 조합에 따라 설치 유무, 개소, 크기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주동의 공용홀은 직접채광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각 동 최상층은 승강기 기계장치 설치 등으로 인해 다소 소음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동의 옥상에는 TV 및 웨더스테이션 안테나, 이동통신용 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 101동, 102동, 103동, 105동 옥상층에 태양광판넬이 설치될 계획이며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는 마감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측벽 석재 디자인은 공사시 입주자 동의없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설비가 설치되며, 일부동·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
· 107동 지하1,2층, 그 외의 동 지하층에 제연팬룸이 설치되어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방송공동수신설비 및 웨더스테이션용 안테나는 106동 상부에 설치예정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단위세대
· 주택전시관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기본형(비확장)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 및 부속 철물류, 가구(시스템가구 포함) 및 가전류, 벽체 및 바닥재, 사워부스, 발코니 난간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라 하더라도 주택전시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 될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고는 2.3M이며 본 공사시 세대내 천장높이는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사시 주택형별 각 실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환기디퓨져, 공기질센서(1개소 설치),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와 사양, 설치개소는 사업승인도서 및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는 기본으로 설치되는 마감재 이외 별도의 전시품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당 전시품이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분양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전기 분전함 및 통신 단자함, 월패드, 콘센트 및 스위치, 소방시설, 디퓨저, 바닥배수구 및 배선기구류 등의 위치와 사양 및 수량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시 세대내 확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 합니다.
· 실 시공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 확장시 외부창호는 이중창호(PL창)가 설치되며, 창호사양(유리종류, 하드웨어, 창틀, 크기,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 제품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단, 비확장시 외부골조에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며, 실외기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외부창호가 설치되지 않는 비확장 세대는 주방과 면한 발코니에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되고, 방과 거실과 면한 발코니는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는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형을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세대분전반내 차단기 수량이 감소하며, 등기구의 수량, 램프 및 배선기구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으며, 사양(램프의 종류 및 개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천장구간 배관으로 마감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세대는 미확장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세대의 천장 부위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우물천장 깊이, 등박스의 크기, 시스템에어컨(옵션 선택 시), 스프링클러 헤드, 원형 디퓨저 등 천장부분이 변경(위치 및 깊이 등)될 수 있습니다.
· 경량벽체는 시장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조적 벽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외부창호 설치 기준은 주택전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사용 시 원활한 에어컨 동작을 위해 실외기실에 있는 그릴창 및 방충망을 열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 빨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전기, 설비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 방향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평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주택전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설계 및 시공상의 이유로 세대의 모든 난간대 형태 및 재질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현장상황에 따라서 단위세대 커텐박스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렌지후드, 위생도기, 수전, 액세서리, 조명기구, 배선기구 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리를 고려하여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다르게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좌,우측 상부장은 주방자동식소화장치 설치공간으로 수납공간 활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네트워크 기기의 전화 통화 기능은 KT 일반전화만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전화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방상부장 뒷면 또는 측면으로 가스배관이 지나가는 상부장은 수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 및 가구가 용량/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일부 부위에 설치되는 모든 창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으며 빨래건조대의 경우 미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설치시 실외기 위치는 실외기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실외기실 출입문과 그릴창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세대 환기장비 설치 위치 및 가구 형태에 따라 개폐가 가능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환기장비 설치로 인하여 소음발생 및 발코니 천장높이 및 문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 도면의 각 세대 주방 창호 크기는 창호 프레임 끝단 간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대 내측에서 창호 프레임 일부가 마감재로 덮혀져 시공되므로 세대 내부에서는 창호크기가 실제 크기보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시 아래층 또는 위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하부층 세대 피난구(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상부 포함)는 피난 시 이용하는 경로이므로 피난구 하부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하시고, 아울러 하부층 입주자는 피난구 상하부의 개폐 등으로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지장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위반 시 제반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월패드 등의 설치 위치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건립세대에 설치되는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참고하시어 계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위치, 콘센트, 월패드류의 제품은 기능과 미관 향상을 위해 색상, 디자인, 버튼 구성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주방, 침실의 콘센트 중 일부는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로 설치됩니다.
· 주방 가구 부착형 콘센트의 수량 및 사양과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기질 센서의 위치와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팸플릿에 적용된 마감 자재의 제품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은 공사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특허 및 의장등록 또는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사의 부도 등)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사 디자인의 타 제품으로 대체 시공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미포함 품목이 혼합되어 표현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평면이라도 세대의 위치에 따라 입면색채가 상이하게 계획 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단열공사 외 환기 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당사의 책임이 없음)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크기, 재질, 색상, 손잡이, 개폐방식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벽체 구조를 확인하고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라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목재문, 가구 및 디자인 월 등의 인테리어 시트는 자재 특성상 색감 및 문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침실 및 욕실 도어 프레임의 사이즈, 재질, 단차,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조대리석, 타일, 주방벽 타일, 욕실벽 타일, 거실 디자인 월, 복도 패널 등의 마감재는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 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창 프레임의 규격이나 소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추가선택품목 포함) 및 일반가구(추가선택품목 포함)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타입별로 설치 위치와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하며,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장 내부 및 렌지후드 상부장은 각종 장비로 인하여 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 및 벽체마감재의 이음 부분이 노출되고, 이음 부분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주방TV 및 욕실스피커폰의 사양, 버튼 구성, 디자인은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으며,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욕실, 발코니 바닥 등의 석재 및 타일 제품의 특성상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의 컬러와 무늬가 일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자처리에 대한 보수 등 해당 자재 교체시 기존 시공 마감재와 색상 및 패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장 상부 몰딩의 규격 및 형태, 재질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및 배선기구류, 통신단자함 및 전기분전함 등의 설치 위치 및 수량과 디자인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내부 수납 치수 및 엔지니어드스톤 디테일(치수, 재질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 높이는 설계, 전기 등의 배관, 배선 공사 시 기능상의 이유로 일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에어컨 배관을 위해 거실에 스탠드형 일반 에어컨용 냉매배관, 침실1(안방)에 벽부형 일반 에어컨용 냉매배관이 설치되며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부세대로 피난을 위한 하향식 피난구가 실외기실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소음발생 및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화재시 피난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 해당세대, 하부개층 세대는 개폐시 알림경보가 울리게 됨)
· 추가선택품목(가구, 가전, 마감 등)은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어야 하며, 옵션 및 평면 선택시 배선기구 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벽패널 및 마감재에 의한 돌출 높이가 생기는 부위에 대한 건축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통신단자함은 63A형은 침실3 도어측면, 63B형은 침실2 도어측면, 84A형은 옵션 선택에 따라 알파공간 또는 현관펜트리, 84B형은 현관펜트리 내부에 매입설치(커버 노출)되며, 아울러 관련 법규 변경으로 인해 전기분전함은 침실(안방)벽에 매입설치(커버 노출)됩니다. 통신단자함 및 전기분전함의 설치위치에 따라 벽두께가 변경될 수 있고 가구 배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관펜트리의 시스템선반 구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 설치위치는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현관 인근에 일괄소등 스위치가 설치되며, 일괄소등 스위치의 성능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분전설비 외에 계약자가 원해서 증설되는 전기용량 및 설비는 추가 비용 발생이 되며 별도 직접 공사하여야 합니다.
· 비확장 발코니 및 실외기실 상부에는 슬라브 천정내부에 설치된 전기, 설비 시설물이 있으므로 타공 시 파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추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다용도실 월패드(조정기, 가실 벽걸이 TV등의 설치 시 매입배관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공 부주의로 인한 배관파손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 내 벽체에는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 등의 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므로(보통 수직 형성) 못질 또는 브라켓 고정 등 벽체 파손을 지양해야 하며, 벽체 및 배관 파손시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관계없이 욕실 천장형 복합환풍기 등을 위해 세대는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가 설치되며 유상선택 세대는 가 계약한 품목에 따른 전기 배관, 배선은 직접 설치해야 합니다.
· 아일랜드장(추가선택품목)의 위치를 옮길 경우 바닥에 인출된 전선관이 노출되어 위치 이동 등 시 고려해야 합니다.
· 본 공사시 욕실 및 다용도실 천장에 배관 및 장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본 공사시 욕실가구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선택형 추가선택품목의 경우 최초 계약자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 시공이 되며, 이후에는 배선, 배관 등 관련 설비공사에 따라 선택변경이 불가합니다.
· 본 공사시 세대내 다용도실, 욕실(샤워부스 포함), 현관, 실외기실 등의 단차는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될 현관 디딤석은 엔지니어드스톤의 특성상 무늬, 색깔 등이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본공사시 시공 편의성을 위해 분절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될 세대내 입상관, 디퓨져, 수전, 스위치, 콘센트의 위치 등은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으며, 적용모델은 동등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내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추가선택품목(옵션)으로 제공되며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택전시관의 경우 자체 난방을 위해 냉난방 겸용 제품 설치) 또한 본 공사시 설치위치, 사양 및 디자인, 브랜드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내 등기구 위치 및 사양, 디자인은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으며,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세대 화재감지기 및 스프링클러의 설치는 주택전시관과 무관하며, 법적 설치기준에 의거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됩니다.
· 본 공사시 세대내 적용될 가전기기(추가선택품목 포함)의 모델사양은 제조사의 사정에 의해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될 세대창호(외부창호 및 목창호, 실외기창 및 다용도실 창 등)의 사양 및 손잡이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될 시스템가구(추가선택품목 포함)의 제조사, 디자인, 시공디테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목창호에 설치된 하드웨어(손잡이, 경첩, 스토퍼, 손끼임 방지장치 등)는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색상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가스배관 및 가스계량기, 분전함, 월패드, 세대 통신단자함 등의 위치는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거실 및 침실등에 설치되는 커텐박스의 위치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의 벽부형 조명기구, 스위치, 환기팬(제어기)의 위치는 하향식 피난구 열림(개폐) 방향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장 후면은 별도의 타일 마감이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내 설치된 빌트인 가전(비스포크 냉장고/오브제 냉장고/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빌트인 전기오븐/식기세척기 등)은 추가선택품목(옵션)으로 제공되며,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가구류(신발장, 주방가구, 욕실가구 등)의 설치로 인하여 노출되지 않는 부위의 후면, 천장, 측면, 바닥면은 최종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세탁기 및 건조기 설치 공간은 세탁기 및 건조기 사양에 따라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내 모든 사양 및 치수는 확장형 기준으로 설치되었습니다.
· 주택전시관내 전시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POP포함)와 본공사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는 시공오차 범위내에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붙박이장 설치시 반드시 실측치수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이 소유하신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기타 소형가전 등 가전사업의 종류 및 크기에 따라 일부 가전제품의 설치공간에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카다로그 및 각종인쇄물, 주택전시관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의 타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다로그 및 각종인쇄물, 주택전시관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여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시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인조대리석(씽크대상판), 엔지니어드스톤류(현관디딤판, 욕실선반)는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자처리에 대한 보수 등 해당 자재 교체시 기존 시공 마감재와 색상 및 패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최하층 세대 및 최상층 세대와 기타층 세대간 천정 높이 공간이 상이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바닥턱은 사용편의성, 바닥드레인 설치위치 변경 등에 의해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수량과 소비전력이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으며, 사양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유니트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의 깊이와 크기는 본 공사시 각종 설비배관 및 덕트, 등기구 설치 등으로 인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온수분배기가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각종 패널류 등)의 등 주요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목창호, 가구 등에 설치되는 문선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일부 디자인 및 사양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현관팬트리, 다용도실, 실외기실 등 도장으로 마감되는 부위의 벽체하부에 오염방지 도장이 시공되며, 도장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침실 목창호 문선에 도배홈이 설치되며(일부 미설치 부위 있음), 미관 및 시공상의 이유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발코니, 욕실, 현관(현관 팬트리), 실외기실, 다용도실 바닥의 타일은 줄눈색상 및 패턴(나누기)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타입 단위세대내 거실 디자인월 및 복도패널 마감부위의 줄눈은 본 공사시 나누기 및 상세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주택전시관과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제품과 서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드레인이 설치되는 다용도실, 실외기실, 욕실 바닥 등 의 경사로 인하여 주택전시관과 높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높이는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문 개폐시 걸림 수 있음)
· 욕실 및 다용도실 천장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 개소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2(부부욕실)에 설치되는 샤워부스는 접합유리로 시공되며, 협력업체 계약관계에 따라 디자인 및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욕실도어 하부에 설치되는 인조대리석 도어씰은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 단위세대내 거실 디자인월 및 복도패널 마감부의 줄눈은 본 공사시 나누기 및 상세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와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주택전시관과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시 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분할,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 방화문은 본공사시 방화성능향상 및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목창호 문틀 및 가구등에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저층부 외벽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저층부 세대 발코니 창호폭이 줄어들거나 창호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세대내 주방가구는 확장형으로 설치되었으며, 기본형은 주방가구 배치가 변경되고, 설치 수납가구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세대내 다용도실에 전시된 건조기는 전기식 건조기 전시용이며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으며, 가스식 건조기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에 설치되는 유리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상판의 인조대리석 마감은 주방가구 상판 이음 부분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설치되는 외부창호 외부면은 1면 착색프레임이 설치되고 내부면은 1면 시트래핑 마감으로 설치되며 본 공사시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마감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외부창호의 크기는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주택전시관과는 각종 창호재 제조 및 설치 사양과 이미지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난간높이, 입면의 형태,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등이 분양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외부창호의 설치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는 세대 내 실외기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가동시 인접한 실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형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아 내외부 온도차로 인한 결로 및 결빙 등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박스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선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도어는 사용상 간섭을 줄이기 위해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발코니 단차의 형태, 나누기, 고정방식, 색상, 재질, 프레임 두께 및 재질 디테일,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는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이, 실외기실에 에어컨실외기 공간과 하향식 피난구가 함께 설치 됩니다.
·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짝수층과 홀수층 위치가 교차되어 설치되며, 본 공사시 하향식 피난사다리의 제조사,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천장에 설치되는 환기장치는 하향식 피난사다리의 위치에 따라 세대별로 설치위치가 상이하며, 본 공사시 덕트가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본 공사시 실외기실 위치 및 크기는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다용도실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설치위치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다용도실내 세탁수전, 배수구 등의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다용도실 도어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어 개폐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팬트리의 바닥난방코일은 중앙부위에만(수납공간제외) 시공되며, 별도의 온도조절기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84A,B타입 현관팬트리에는 결로 방지용 코일이 설치되나 내부 물품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시 실외기실에 에어컨 냉매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내 입상배관 및 배수구 등의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에어컨 실외기실내 환기장치, 환기조절기, 조명기구, 스위치 등의 위치와 사양은 사업승인도서 및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확장 부분의 외부창호는 PVC재질로 설치되며, 회사의 도산 및 제품 단종 등의 사유로 동등한 제품(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손잡이, 유리/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모든 목창호(욕실 포함)의 하드웨어(경첩, 손잡이, 스토퍼 등)는 본 공사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끼임 방지 장치는 설치될 예정이며, 창호 종류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통신단자함이 현관 팬트리 내부에 노출되어 설치될 경우 이로 인한 공간 및 내부의 시스템선반 구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 욕실에 설치된 점검구는 본 공사시 크기 및 위치, 설치개소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표기한 주방 가스배관 설치위치는 다소 변동 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우수, 오배수관 등)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부 발코니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 및 바닥배관에 의한 단차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시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에 설치되는 온수분배기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해당부분 주방가구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세대내 거실 및 침실, 욕실 등에 설치된 환기 디퓨저는 본 공사시 위치와 개소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에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됩니다. 아울러 자동식 소화기 조작부가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욕조는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현관 부위에 설치되는 일괄소등 스위치의 성능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이 일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거실에 설치된 조명 스위치 및 월패드의 성능 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세대내에 설치된 콘센트는 법적 설치기준에 의거 일부 콘센트의 2구 중 1구가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로 제공됩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환기디퓨져, 조명기구, 콘센트, 배수구, 위생기구, 수전, 악세사리류 등의 위치와 사양은 본 공사시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식탁용 팬던트 예비 스위치만 제공되며, 별도의 주방 식탁용 팬던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시 실외기는 설치되지 않으며, 침실만 기본으로 냉매배관이 설치되는 슬리브가 제공되며, 침실2,3에 일반형 에어컨을 설치시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슬리브, 냉매배관, 드레인관, 실외기 위치 선정)은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 모든 세대는 실외기실에 실외기 공간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세대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 및 급수급탕분배기, 온수분배기의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의 벽부형 조명기구는 하향식 피난구 열림(개폐) 방향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개별 소유하고 있는 대용량 가전기기 사용시 세대 전기 용량과 차단기 용량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전기관련 공사를 해야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시 제공되는 확장 기본형 품목은 평면의 형태 및 설치공간의 제약 등으로 인해 주택형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계약전 주택전시관에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별 확장 기본형 (비확장 대비) 추가 지급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3A : 주방공간 확장에 따른 주방가구 상하부장 추가, 냉장고 수납장, 침실3 붙박이장, 다용도실 세탁 선반
 2) 63B : 주방공간 확장에 따른 주방가구 상하부장 추가, 냉장고 수납장, 침실1 화장대(벽부등 포함) 및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 시스템선반), 침실3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 시스템선반), 다용도실 세탁 선반
 3.1) 84A (알파공간 기본세대) : 주방공간 확장에 따른 주방가구 상하부장 추가, 냉장고 수납장(키큰장 포함) 침실1 화장대(벽부등 포함) 및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 시스템선반), 침실3 붙박이장, 다용도실 세탁 선반
 3.2) 84A (수납강화형 선택세대) : 현관 팬트리(가구도어, 시스템선반), 주방 팬트리(가구도어, 시스템선반), 주방공간 확장에 따른 주방가구 상하부장 추가, 냉장고 수납장(키큰장 포함), 침실1 화장대(벽부등 포함) 및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 시스템선반), 침실3 붙박이장, 다용도실 세탁 선반
 4) 84B : 주방공간 확장에 따른 주방가구 상하부장 추가, 냉장고 수납장(키큰장 포함) 침실1 화장대(벽부등 포함) 및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 시스템선반), 침실3 붙박이장, 다용도실 세탁 선반
5. 지하 주차장 및 기타 공유시설
·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시설물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계획승인)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지붕의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전기 및 기계 설비와 관련한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됩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공간에 회차 공간이 없어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차로의 너비는 6m 이상(공동주택 하부 통과부위 제외),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3m 이상(지하1층 2.7m 이상, 지하2층 2.3m이상), 주차면은 2.1m 이상입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한 지붕 구조물에 의해서 저층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권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구획은 106동, 107동 인근 지상에 구획되어 있고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단지 주출입구와 근접하여 보행자와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팬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용 DA 및 기전실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기계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층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주 형태, 위치(기둥위치 포함),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실내 피트니스 등)의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됩니다.
· 주거공용부분인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옥상, 전실 및 홀 등은 주거공용부분으로 개인적으로 전용화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질조사 등을 통해 지하수위가 높은 경우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영구배수공법을 적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상가외부 가로수로 인한 조망등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등이며 내부시설물 및 내부시설물의 인테리어(관리사무소 제외)와 디자인 등은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주민운동시설 제외) 집기류는 제외되며,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상부에 위치한 107,108동의 저층부 세대의 경우, 실외기실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상가외부에 계단 및 램프, 볼라드, 가로등 보차로 구분용 펜스, 각종게시판, 버스 쉘터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가 및 단지 내 지상부 녹지대는 면적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모형,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상주차장 주차구역은 상가를 위한 기본 일반주차 구역으로 설치되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지하 출입구와 지하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 현장 여건에 따라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배수펌프 및 영구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시공시 단지 주변의 레벨 변경에 따른 단지내 레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다.
·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전기차주차에는 일반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며, 관련 민원을 시공사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은 급속충전기 8개소, 완속충전기 8개소, 이동형충전기 16개소 설치되며, 수량 및 설치장소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은 세대수의 약 15%가 지하주차장 내 동별 설치됩니다.(냉동, 냉장함 제외)
· 지하주차장 내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전기, 통신용 배관 및 트레이가 노출되어 시공되며, 지하주차장 내 공용공간을 공유하여 설치되므로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인택배 시스템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되는 설비이며, 향후 원격관리 서비스(택배보관 통화, 문자발송, 카드결제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업체 및 기간사업자로부터 고정IP를 유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 홍보물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택전시관 방문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포장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을 위하여 제작된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으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CG)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명칭
· 본 아파트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과정,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속칭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 주택전시관은 63A, 84B타입의 세대를 시공하였으며,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타입이라 하더라도 단지배치에 따라 주택전시관과 달리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PVC창호, 목창호,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주택전시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는 기본품목, 추가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추가선택품목(설치사항, 규격), 주택전시관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사전에 주택전시관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건립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의 시공부분, 단지모형,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CG 또는 사진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세대 내 분전반, 통신단자함, 월패드 등의 설치 위치 및 사양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서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전시관의 연출을 위해 시공부분 또는 기타 홍보물 등의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계획승인) 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분양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등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한 설계변경은 현재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전시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상황인 공용부분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시행인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시공 시 일부 변경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도서에 따라 시공됩니다.
· 본 주택전시관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액자 등 포함), 이동식 가구, 벽장식 패널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전시용 조명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분양가 미포함)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등), 가구 등이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는 주택전시관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전시관 외부창호에 설치된 유리도 주택전시관으로 본 공사 유리는 사업승인도서에 적합한 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본 주택전시관은 일정기간 공개 후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환기구(세대기용), 소방 감지기 등은 주택전시관 시설물로서 본 공사시 설치와 무관합니다. (본 공사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항, 우물천장, 커텐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주택전시관 소방법령임)
· 단위세대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등) 설치 시 필히 실측후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 실별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면 및 주택전시관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 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류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 위치 등은 주택전시관 시설물의 사양 및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주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주변현황, 일조권, 조망권, 주변의 경관, 입면과 주변의 건물 혐오시설 유무 등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 설치된 CCTV, 소화기는 주택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카달로그 및 주택전시관으로 확인이 어려운 공용부분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은 준공도서에 준합니다.
· 주택전시관 내 등기구 조도량(l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 공사시 KS조도기준 동등이상으로 적용됩니다.
· 주택전시관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시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으로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 2019년 8월 20일부터 체결하는 분양권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치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의해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종전 주택,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설계변경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여부에 따라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회사
· 시공사인 디엘건설 주식회사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가 아니고 시공사로서 참여합니다. 디엘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자의 지위에서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 관련 민원업무만 담당하며, 분양관련 민원업무는 사업주체(사업시행자/위탁자)가 담당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전시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이며,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 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건축	소방	정보통신	전기	비고
회사명	㈜신동아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디아이지엔지니어링	㈜한빛네트웍스	㈜한양기술단	
감리금액	1,990,118,900	434,500,000	84,700,000	391,251,6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주택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새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그 임직원 등이 자기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주채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의 입주 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날짜를 지정·통보할 예정이며, 사전방문일자에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입주 및 유의사항
• 입주예정일 : 2024년 10월 예정 (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임)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하며,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부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인허가등 또는 관련 기관(교육청)에서 입주예정일을 앞당길 요청할 경우 입주예정일을 앞당길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정기간이 미도래한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기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함. 단,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는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함.
• 추후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 날)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 및 제세공과금(재산세 등)등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실입주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됨.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음.
• 입주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용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등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필요에 따라 연장가능)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 복리시설 중 일부분을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장소로 시행 및 시공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동절기 입주시 세대물청소등의 사유로 통수 및 동파방지 사전난방이 진행되어 가스사용량이 발생될 수 있으며, 분양세대 중 입주기한내 입주세대는 입주개시당일이전까지, 입주기한내 입주하지 못한 세대는 입주지정일 당일까지 사전난방이 진행되며, 이후 발생하는 동파방지 사전난방관리 및 가스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단, 키불출 세대는 키불출 당일을 입주일로 간주하여 난방관리를 종료하고, 이후 발생하는 가스비용 및 관리는 키불출자 부담으로 함)
■ 부대복리시설 :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라운지 카페, 실내놀이터, 프라이빗독서실, 스터디카페, 맘스스테이션,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센터, 락커룸 및 샤워실, 스크린골프, 실내골프연습장, GX룸, 유아놀이터 등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장미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디엘건설 주식회사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200171-0018480	110111-0163115	110111-7736808
주 소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 123번길 8, 2층 (봉선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구월동)	서울 종로구 통일로 134 D타워

■ 시공회사
· 시공사인 디엘건설 주식회사, 디엘이앤씨 주식회사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가 아니고 시공자로서 참여합니다. 디엘건설 주식회사, 디엘이앤씨 주식회사는 시공자의 지위에서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 관련 민원업무만 담당하며, 분양관련 민원업무는 사업주체(사업시행자/위탁자)가 담당합니다.
■ 홈페이지 주소 : www.dlcon-apt.co.kr
■ 주택전시관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682-12
■ 분양문의 : ☎ 062-946-168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대하여는 주택전시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주택전시관에서 확인 바랍니다.

https://www.dlcon-apt.co.kr
사업주체 | 장미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사 | 디엘건설 주식회사,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대표번호 062.946.1680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주택전시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